

CLOSING ACCOUNTS &
TAX ADJUSTMENT OF CORPORATION

2020 법인세 신고대비
개정 및 실무이슈

HIT THE SPOT SERIES 1

2019년
세무조정 세무이슈



YOUR BEST HRD PARTNER
씨어프오아카데미
www.cfoi.kr

2019년 K-IFRS 제1116호 ‘리스’ 개정에 따른 세무리스크 관리(리스이용자 중심)

중전 리스 회계모형(K-IFRS 제1017호 ‘리스’)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일부 예외 제외)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실질적으로 중전 규정을 유지하였다. 개정된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리스부채의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2) 사용권자산의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며 원칙적으로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으로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3) 세무회계

법인세법상 운용리스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기통 23-24...1).

- ①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②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③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④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운용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인식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5) K-IFRS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리스크 조정

1) 운용리스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령 24 ⑤). 따라서 사용권자산의 인식은 손금(△유보)처리하고 사용권자산의 상각시 추인한다. 리스부채의 인식은 익금(유보)처리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시 손금추인한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7의2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 23-24...1).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과 관련하여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법기통 28-53...1). 따라서 운용리스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